

의안번호	제 278 호
의 결 연 월 일	2012년 월 일 (제306회)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2년 1월 3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78
----------	-----

제출연월일 : 2012년 1월 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시·도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심의 등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7조)
- 위촉위원의 임기 및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8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기획관리실장
2. 균형건설국장
3. 소방본부장
4.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1명
5.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
6.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7.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장
8.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장
9. 운수사업자단체, 그 밖의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의 궐위시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의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상정된 의제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위원회의 경과조치) 종전 충청북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관련법령 발췌

□ 교통안전법

제13조(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도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도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시·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이하 "지역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1.7>

② 전문위원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 및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위원장 및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0.1.7>

제8조(지역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도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 및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8.19>

② 시·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이하 "지역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1.7>

제9조(수당 등) 국가교통위원회·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또는 지역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7>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5조(국가교통위원회의 운영) ①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국가교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